

1. 개정 이유

기후변화 대응과 2035NDC(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) 달성을 위해 해양 탄소흡수원의 개념을 정의하고, 해양 탄소흡수원 기능의 유지·증진을 위해 국가의 책무와 공공기관, 민간 등의 활동 및 연구·개발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

2. 주요내용

가. 해양탄소흡수원의 개념 도입(안 제2조)

- 1) 현 법률에는 해양 탄소흡수원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여 해양 탄소흡수원 정의 조항을 신설함.

나. 해양탄소흡수원에 대한 기본원칙과 국가 등의 책무 규정(안 제4조)

- 1) 해양 탄소흡수원의 유지·증진을 위해 국가 등의 책무 조항을 신설함.

다. 해양탄소흡수원의 유지·증진을 위해 필요한 국가 등의 각종 활동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(안 제49조)

- 1) 공공기관,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해양 탄소흡수원 유지·증진을 위한 활동 근거 규정을 마련함.
- 2) 공공기관,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해양 탄소흡수원 유지·증진 활동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7. “해양 탄소흡수원”이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해양생태계 및 구성요소로서 맹그로브, 해초대, 염습지 및 그 밖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제4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해양 탄소흡수원 유지·증진을 위한 조사·연구·기술개발 및 대책의 수립·시행

제7조제1항 중 “해양생물종 및 서식지”를 “해양생물종, 서식지 및 해양 탄소흡수원”으로 한다.

제65조를 제67조로 하고, 제63조를 제65조로 하며, 제61조를 제63조로 한다.

제64조를 제66조로 하고, 제62조를 제64조로 하며, 제59조 및 제60조를 각각 제61조 및 제62조로 하고, 제50조부터 제58조까지를 각각 제52조부터 제60조까지로 하며, 제49조를 제51조로 한다.

제49조의2를 제51조의2로 한다.

제60조의2를 제62조의2로 한다.

제6장에 제49조 및 제5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9조(해양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)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, 민간단체, 기업 및 국민이 해양 탄소흡수원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, 민간단체, 기업 및 국민의 해양 탄소흡수원 유지·증진 활동에 대하여 인센티브 등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탄소흡수원 유지·증진 활동과 지역별로 특성화된 해양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연구·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50조(해양탄소흡수원 연구·기술개발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 탄소흡수원 유지·증진, 해양 탄소흡수원 평가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공공기관·연구소·대학 등에 연구개발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술의 보급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.

제49조 앞의 “제7장 보칙”을 삭제한다.

제5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장 보칙

제61조 앞의 “제8장 벌칙”을 삭제한다.

제6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8장 벌칙

제63조의2 및 제63조의3을 각각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~ 16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~ 16. (현행과 같음) 17. <u>“해양 탄소흡수원”이란 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해양 생태계 및 구성요소로서 맹그로브, 해초대, 염습지 및 그 밖의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</u>
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. 1. ~ 6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4조(국가 등의 책무) ①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<u>해양 탄소흡수원 유지·증진을 위한 조사·연구·기술개발 및 대책의 수립·시행</u>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
제7조(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)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태계에 관한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·보급 등을 위하여 해양생태도, <u>해양생물종 및 서식지</u> 정보 등을 전산화한 해양	제7조(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) ①----- ----- ----- ----- <u>해양생물종, 서식지 및 해양 탄소흡수원</u> -----

생태계정보체계(이하 “해양생태계정보체계”라 한다)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~ ④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49조(해양 탄소흡수원의 유지 및 증진)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기관, 민간단체, 기업 및 국민이 해양 탄소흡수원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, 민간단체, 기업 및 국민의 해양 탄소흡수원 유지·증진 활동에 대하여 인센티브 등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탄소흡수원 유지·증진 활동과 지역별로 특성화된 해양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연구·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50조(해양탄소흡수원 연구·기술 개발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

	<u>해양 탄소흡수원 유지·증진, 해양 탄소흡수원 평가 등을 위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거나 공공기관·연구소·대학 등에 연구개발을 위탁할 수 있다.</u> <u>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가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술의 보급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.</u>
<u>제7장 보칙</u> <u><신 설></u> <u>제49조 ~ 제60조의2</u> (생략)	<u><삭 제></u> <u>제7장 보칙</u> <u>제51조 ~ 제62조의2</u> (현행 제49조부터 제60조의2까지와 같음)
<u>제8장 벌칙</u> <u><신 설></u> <u>제61조 ~ 제65조</u> (생략)	<u><삭 제></u> <u>제8장 벌칙</u> <u>제63조 ~ 제67조</u> (현행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와 같음)